



제429회국회(정기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청원경찰 보수등급 승급기간 단축 및 경비구역 외
직무수행 근거마련 등〉

- 모경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457호·제2211459호)
- 박균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589호)

2025.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 검토의견	5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근무 청원경찰의 보수체계 변경(모경종·박균택의원안 제6조제2항)	5
2. 경비구역 외 직무 허용 특례 신설(모경종·박균택의원안 제3조의2 신설)	11
3. 청원경찰의 재직기간별 대외직명 사용근거(모경종의의원안 제6조의2 신설)	16

I . 제안경위

가. 모경중의원안(1)

1. 제 안 자 : 모경중의원 등 23인
2. 제 안 일 : 2025. 7. 11.
3. 회 부 일 : 2025. 7. 14.

나. 박균택의원안

1. 제 안 자 : 박균택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5. 7. 21.
3. 회 부 일 : 2025. 7. 22.

다. 모경중의원안(2)

1. 제 안 자 : 모경중의원 등 22인
2. 제 안 일 : 2025. 7. 14.
3. 회 부 일 : 2025. 7. 15.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모경중의원안(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은 국가중요시설 등 공공시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경비 업무를 수행하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공기관 민원실, 복지 현장 등에서 공무원을 향한 폭력 및 위협 행위가 발생하면서 이들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청원경찰의 직무 범위 및 경비구역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타 법령상 청원경찰이 특정 현장 단속업무를 수행할 경우, 현행법상 정해진 경비구역과의 불일치로 인해 법적 혼란과 실무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청원주가 경비구역 외에서 직무수행이 필요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령 간의 충돌을 해소하고 청원경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박근혜의원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중요 시설의 경비를 담당하며,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일부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징계령을 따르는 등 그 책임과 의무는 공무원에 준하면서도, 처우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임.

특히, 청원경찰은 ‘보수등급제’가 적용되어 일정 재직기간에 따라 순경, 경장, 경사, 경위에 준하는 보수를 받고 있으나, 순경에서 경장으로 승급하기까지 무려 15년이 소요되는 등 유사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이나 방호직공무원에 비해 지나치게 길어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기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아울러 최근 악성 민원인에 의한 폭언, 폭행, 협박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공무원이나 민원공무원 등의 신변 보호를 위해 청원경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정해진 경비구역 외 직무수행에 제약이 있어 긴급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현장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보수등급 상승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보수 수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처우를 개선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청원주가 경비구역 외에서 직무수행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법령 간 충돌을 해소하고 청원경찰의 직무 효율성 및 공공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6조 제2항제5호 신설 등).

다. 모경중의원안(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은 국가중요시설 등 공공시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경비 업무를 수행하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은 보수체계가 경찰공무원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승급 제도의 제약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실정임. 순경급에서 경장급까지의 승급이 최소 15년이 소요되는 등 일반적인 공무원 승진 체계에 비해 지나치게 오랜 기간이 필요하며, 경위급까지는 약 30년의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또한, 청원경찰 제도는 단일 직급체계로 운영됨에 따라 현장 지휘체계의 혼란이 발생하여 업무 수행 및 조직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이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보수체계 개편 및 대외직명 신설을 통해 처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휘체계를 명확히 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등).

Ⅲ. 검토의견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근무 청원경찰의 보수체계 변경 (모경종·박균택의원안 제6조제2항)

현행	모경종의원안(2)	박균택의원안
제6조(청원경찰경비) ① (생략)	제6조(청원경찰경비) ① (현행과 같음)	제6조(청원경찰경비)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u>감안하여</u>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 ----- ----- ----- ----- -----.	② ----- ----- ----- ----- ----- ----- <u>준용하여</u> -----.
1. 재직기간 <u>15년</u> 미만: 순경	1. ----- <u>6년</u> ----- -----	1. ----- <u>6년</u> ----- -----
2. 재직기간 <u>15년</u> 이상 <u>23년</u> 미만: 경장	2. ----- <u>6년</u> ----- <u>13년</u> -----	2. ----- <u>6년</u> ----- <u>13년</u> -----
3. 재직기간 <u>23년</u> 이상 <u>30년</u> 미만: 경사	3. ----- <u>13년</u> ----- <u>-21년</u> -----	3. ----- <u>13년</u> ----- <u>-21년</u> -----
4. 재직기간 <u>30년</u> 이상: 경위	4. ----- <u>21년</u> 이상 <u>30년</u> 미만-----	4. ----- <u>21년</u> 이상 <u>30년</u> 미만-----
<신설>	5. 재직기간 <u>30년</u> 이상: 경감	5. 재직기간 <u>30년</u> 이상: 경감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청원주는 직무수행 중 현저한 공적을 세	

현행	모경중의원안(2)	박균택의원안
	<u>운</u> 청원경찰에 대하여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u>바에 따라</u> 보수에 대 <u>한</u> 우대조치를 할 수 <u>있다.</u>	

개정안들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보수승급 기간을 단축하고 최고등급(재직기간 30년 이상: 경감)을 신설하여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보수산정 재직기간 변경>

현행('14년 개정)	모경중·박균택의원안	단축기간
15년 미만: 순경	6년 미만: 순경	
15년 이상 23년 미만: 경장	6년 이상 13년 미만: 경장	9년 단축
23년 이상 30년 미만: 경사	13년 이상 21년 미만: 경사	10년 단축
30년 이상: 경위	21년 이상 30년 미만: 경위	9년 단축
(신 설)	30년 이상: 경감	최고등급 신설

현행 「청원경찰법」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보수를 재직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4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순경에서 경장까지 15년, 경장에서 경사까지 8년, 경사에서 경위까지 7년이 소요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최고등급이 경위에 한정되어 있어 장기근속자에 대한 처우개선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청원경찰의 승급 기간을 단축하고 30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 경감급 보수를 신설하여 장기근속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근무의욕을 높이려는 것으로,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지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대우를 받아온 현실을 고려한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경찰공무원은 범죄예방·수사·교통 등 치안 전반을 담당하며 엄격한 채용절차와 계급별 승진시험 또는 공적심사를 거쳐 임용되는 반면, 청원경찰은 배치된 사업장에서 경비라는 단일 직무만 수행하고 기관별로 임의 채용되며 승진시험 제도가 없음. 또한, 청원경찰은 인사 이동 없이 동일 시설에서 장기간 근무하기 때문에 재직기간에 따른 직무의 종류나 곤란성, 책임의 변화가 거의 없어 경찰공무원과 유사한 보수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직무 특성상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¹⁾

둘째, 국가·지자체 소속 청원경찰 처우를 공무원 수준으로 높이면, 국가·지자체 외 일반 사업장에 근무하는 청원경찰과 비교²⁾하여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반해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신분·채용과정 및 업무난이도가 다른 경찰·방호직 공무원 등 기존 유사 직종의 불만에

1) 구체적인 내용은 동 보고서 참고자료 <경찰공무원·방호직과 신분·채용과정 등 비교>, <국가·지자체 근무 청원경찰과 국가·지자체 외 근무 청원경찰 비교> 참조

2) 국가·지자체 외 일반사업장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2010년 이후로 줄곧 보수등급 구분없이 순경 봉급을 최저부담액으로 하고 있음.

의한 갈등 소지 우려도 존재함.

셋째, 국가·지자체 소속 청원경찰은 2010년 보수 관련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3단계 보수체계를 도입하였고, 2014년에는 이를 4단계로 확대하면서 재직기간을 단축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개선이 이루어진 바 있음.³⁾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청원경찰의 보수산정 시 경찰공무원 직급에 해당하는 재직기간으로 단축할 경우, 향후 5년간 총 3,554억 8,500만 원 (연평균 710억 9,700만 원)의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한편, 모경중의원안은 청원주로 하여금 직무수행 중 현저한 공적을 세운 청원경찰에 대하여 보수에 대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청원경찰의 사기진작과 업무성과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약 1,300여 개소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직무형태와 근무여건이 다양하고 배치시설별 운영예산이 상이한 점을 고려할 때, "현저한 공적"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과 우대조치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3) 과거 처우개선 반영 개정 사항

① 2010년 개정: 공무원 신분이 아님에도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복무상 공무원에 준하는 여러 가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국가기관·지자체 소속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순경의 보수를 적용받던 청원경찰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3단계 보수체계 도입(15년 미만: 순경 / 15년 이상 30년 미만: 경장 / 30년 이상: 경사).

② 2014년 개정: 국가기관·지자체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보수 단계별 재직기간을 단축하고 보수단계를 한 단계 더 신설(3단계 → 4단계)하여 보수를 상향 조정(15년 미만: 순경 / 15년 이상 23년 미만: 경장 / 23년 이상 30년 미만: 경사 / 30년 이상: 경위).

특히, ‘보수에 대한 우대조치’의 법제화 여부 관련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원경찰의 봉급은 「청원경찰법」 시행령[별표1]을 통하여 정하고 있으며, 수당은 경찰청장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매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가 제정·시행되고 있음⁴⁾.

「2025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는 정근수당,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등을 경찰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시된 항목 외의 수당은 자체 예산이 편성된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구조와 규정 취지를 고려할 때, ‘보수에 대한 우대조치’의 법제화 여부는 청원 시설별 규모 및 예산사정 등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당성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대한 부처의견으로,

경찰청은 청원경찰은 경찰공무원과 달리 배치된 시설에서 단일 경비업무만 수행하고 직무 난이도·위험성·책임도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경찰공무원과 동일한 보수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직무 특성상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임.

기획재정부는 청원경찰이 기관별 임의 채용과 승진시험 부재, 단일

4) 「2025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

다. 제1호나목의 최저부담기준액 외에 정근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및 성과상여금을 「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재직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경위에 준하여 지급한다.

라. 제1호나목에 규정된 수당 외의 다른 수당은 자체 예산이 편성된 항목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경비업무 수행 등 직무 범위와 책임이 제한적이고, 이미 경찰 수준의 보수와 수당(정근·가족·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등)이 지급되며 과거 수차례 처우개선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보수체계 변경 국가·지자체 외 근무하는 청원경찰 및 유사직종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하여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2. 경비구역 외 직무 허용 특례 신설(모경중·박균택의원안 제3조의2 신설)

현행	모경중의원안(1)	박균택의원안
<신설>	제3조의2(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직무 특례)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된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비구역 외의 장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청원주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경비구역 외의 장소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신변보호가 필요한 경우 2. 경비구역이 아닌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 또는 시설의 경비가 한시적으로 필요한 경우 3. 국가기관 또는 지방	제3조의2(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직무 특례)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된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비구역 외의 장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청원주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경비구역 외의 장소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공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신변위협이 명백하거나 예상되어 보호가 필요한 경우 2. 경비구역 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업장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한

현행	모경종의원안(1)	박근혜의원안
	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공식 행사의 행사장에서 질서를 유지하거나 위험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집회 또는 시위는 제외한다. 4. 전시·재난 등에 의한 기관 소산(疏散)과 이를 대비한 훈련에 따라 이전된 장소에 배치가 필요한 경우 5.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재산 등을 운반하기 위한 호송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요건·절차 및 준수사항 등 청원경찰의 직무 특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적인 경비가 필요한 경우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식행사에서 질서를 유지하거나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는 원칙적으로 관여할 수 없으나, 관할 경찰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보조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4. 전시·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상황에 따라 해당 기관이 소산(疏散)하거나, 이를 대비한 훈련 등의 사유로 경비가 필요한 경우 5.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재산이나 물자의 운반에 따라 호송이 필요

현행	모경종의원안(1)	박균택의원안
		<u>한 경우</u>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의 사유에 준하는 경 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다른 법령에서 청원 경찰이 직무상 공무 원으로 간주되거나 이에 준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정한 경 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 비구역 외 직무 수행 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요건, 절차, 범위, 준수 사항 등 직무 특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개정안들은 모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경비구역 외의 장소에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현행법상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지정하는 경비구역에서만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음. 이는 1962년 구 「청원경찰법」 제정 당시부터 "건물등의

경비 및公安업무에 만전을 기하려는" 입법취지에 따라 청원경찰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경찰공무원과의 역할분담을 통해 치안 질서를 유지하려는 제도적 장치임.

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력 및 위협 행위 증가에 따른 신변보호의 필요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나 한시적 경비 수요, 중요재산 호송 등의 상황에서 청원경찰이 경비구역 외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따라서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청원경찰의 직무범위와 경비구역을 확대하려는 개정안들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청원경찰의 경비구역 외 직무수행과 관련해서는, 시설 방호라는 본연의 목적과 인력 운용 현실, 과거 편법 운용 사례 등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첫째, 「청원경찰법」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중요시설 방호를 위해 제정된 것으로, 한정된 인력으로 직무범위만 확대할 경우 본연의 업무인 시설 방호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어 입법 및 제도 취지를 벗어날 수 있음. 특히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 배치시설 총 1,302개 중 877개(67.3%) 시설에서 5명 이하, 1,042개(80%)에서 10명 이하로 근무하고 있는 소규모 운영 현실을 고려할 때 인력 분산에 따른

본래 업무 공백이 더욱 우려됨.

둘째,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라는 형식적 통제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편법 운용 가능성이 있음. 과거 청원경찰이 주정차 단속, 골재불법채취 감시 업무 등에 투입된 사례가 많아, 2001년 법 개정을 통해 직무범위를 ‘경비 목적의 필요 범위’로 한정된 점을 고려할 때, 신변보호를 빙자한 차량운전이나 행사장 질서유지 목적의 주정차·쓰레기투기 단속 등 편법운영 가능성도 있음.⁵⁾⁶⁾

셋째, 일반근로자 신분인 청원경찰에게 공적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한다는 부담과 함께, 경비구역 외에서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무기·경찰장구 등 사용에 따른 인권 침해 논란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개정안에 대해 경찰청은 경비구역과 직무범위를 확대할 경우 주요 인사 신변보호 및 행사장·호송 경비 등 인적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 안전에도 일정 역할이 가능하나, 「청원경찰법」 취지상 시설 방호 본연의 업무 공백과 과거 편법 운용 사례, 일반근로자 신분에 따른 책임 논란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5) 이와 관련하여, 청원경찰의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 금지와 청원주의 강요행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2213)이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임.

6) 뉴스1, “논산시, 청원경찰을 시장 운전기사로 ‘물의를’”(2017. 3. 5.)

3. 청원경찰의 재직기간별 대외직명 사용근거(모경중의원안 제6조의2 신설)

현행	모경중의원안(2)
<신설>	제6조의2(청원경찰의 대외직명) 청원경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직기간별로 대외직명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청원경찰 제도에 직급체계가 존재하지 않아 지휘체계 혼란 및 조직 효율성 저하 등이 발생하여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해 재직기간에 따른 대외직명⁷⁾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명확한 대외직명 부여는 실무자의 자긍심과 소속감을 높이고, 직무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대외직명을 법제화 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첫째, 일반근로자 신분인 청원경찰에게 공무원 직급체계와 유사한 대외직명을 법령에 신설할 경우 신분·책임 등을 둘러싼 국민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

7) ‘대외직명’이란 법령상 직위가 없는 실무직 공무원에게 업무분야별 특성에 맞는 명칭을 선정·부여하여 행정의 전문화를 유도 및 담당 직무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으로 정의하고 있음.(「6급이하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 제1조·2조 참조)

둘째, 공무원은 관서·부서간 이동이 잦고, 직무의 종류·난이도 등이 다양한 반면, 청원경찰은 시설별로 소규모 인원⁸⁾으로 배치된 구역에서 단일 경비업무를 수행하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청원경찰 관리 규정이나 취업규칙을 통하여 각 기관의 필요에 따라 청원경찰에게 ‘공공안전관’ 등 대외직명을 부여하여 운영⁹⁾하고 있으며,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에 지휘체계 확립을 위해 조장·반장·대장 등 감독자를 지정하여 운용¹⁰⁾하는 등 필요한 경우 행정규칙이나 자치단체규정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대외직명을 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경찰청은 청원경찰에 대해 대외직명을 도입하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청원경찰은 공무원이 아닌 일반근로자 신분으로 공무원 직급체계와 유사한 대외직명을 법령에 규정하는 것은 입법 체계상 적절하지 않고, 경찰과 달리 소규모 인원으로 인사이동 없이

8) 청원경찰 배치시설 총 1,302개 중 877개(67.3%) 5명이하, 1,042개(80%) 10명이하, 1,182(90.7%) 20명이하 근무중 [‘24.10월기준]

9) 현재 서울시 청원경찰은 ‘공공안전관’, 해양수산부는 ‘항만보안관리관’ 등 재직기간과 무관하게 자체 취업규칙 또는 내부규정으로 대외직명을 정하여 운영 중임.

10)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9조(감독자지정)

① 2명 이상의 청원경찰을 배치한 사업장의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지휘·감독을 위하여 청원경찰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선정하여 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독자는 조장, 반장 또는 대장으로 하며, 그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4: 감독자 지정기준>

근무인원	조장	반장	대장
9명 이하	1명		
10명~29명	2~3명	1명	
30명~40명	3~4명	1명	
41명~60명	6명	2명	1명
61명~120명	12명	4명	1명

'경비'라는 단일직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에 대외직명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344

[참고자료]

1. 「청원경찰법」 및 시행령 보수규정

「청원경찰법」 제6조(청원경찰경비) ① 청원주는 다음 각 호의 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과 각종 수당
2. 청원경찰의 피복비
3. 청원경찰의 교육비
4. 제7조에 따른 보상금 및 제7조의2에 따른 퇴직금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직기간 15년 미만: 순경
2. 재직기간 15년 이상 23년 미만: 경장
3. 재직기간 23년 이상 30년 미만: 경사
4. 재직기간 30년 이상: 경위

③ 청원주의 제1항제1호에 따른 봉급·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수당은 제외한다)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비용의 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告示)한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 가계보전수당, 실비변상 등으로 하며, 그 세부 항목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은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기간으로 한다.

[별표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표

(제9조제1항 관련)

(월 지급액, 단위: 원)

재직기간 호봉	15년 미만	15년 이상 23년 미만	23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
1	1,877,000	-	-	-
2	1,914,800	-	-	-
3	1,962,500	-	-	-
4	2,020,700	-	-	-
5	2,090,300	-	-	-
6	2,172,300	-	-	-
7	2,263,100	-	-	-
8	2,350,400	-	-	-
9	2,434,300	-	-	-
10	2,514,800	-	-	-
11	2,591,700	-	-	-

12	2,667,900	-	-	-
13	2,741,200	2,926,800	-	-
14	2,812,300	3,000,800	-	-
15	2,880,300	3,071,900	-	-
16	2,946,000	3,140,600	-	-
17	3,010,300	3,204,600	-	-
18	3,070,200	3,266,700	-	-
19	3,129,000	3,326,400	3,718,800	-
20	3,185,000	3,383,300	3,779,900	-
21	3,237,800	3,437,500	3,838,200	-
22	3,288,700	3,489,700	3,893,100	-
23	3,337,200	3,539,300	3,946,500	-
24	3,383,700	3,587,200	3,996,900	4,274,900
25	3,427,800	3,632,700	4,044,800	4,325,900
26	3,468,100	3,676,700	4,090,700	4,372,600
27	3,502,500	3,713,400	4,129,400	4,412,500
28	3,535,700	3,748,800	4,165,600	4,451,100
29	3,567,800	3,782,200	4,200,500	4,487,400
30	3,599,100	3,814,700	4,234,000	4,521,600
31	3,629,500	3,846,100	4,265,400	4,554,500

2. 22대 국회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교

구 분	임호선의의원 (2202661)	전용기의의원 (2210594)	모경중의원 (2211457)	모경중의원 (2211459)	박균택의원 (2211589)
직급체계 도입	5단계 직급 신설 (청원경-청원 장-청원사-청 원위-청원감)	-	-	대외직명 사용 가능 (대통령령 위임)	-
우수자 조기 승진	대통령령으 로 최대 50% 단축 가능	-	-	-	-
보수등급 변경 기간 단축	단축	단축	-	단축	단축
보수등급 신설	있음 (청원감)	-	-	있음 (경감급)	있음 (경감급)
보수 기준	경찰공무원 보수 ‘적용’	경찰공무원 봉급 ‘적용’ 수당 ‘준용’	-	-	경찰공무원 보수 ‘준용’
공적에 따른 보수 우대	-	-	-	공적에 따른 보수 우대 가능 (대통령령 위임)	-
경비구역 외 직무 허용 여부	-	-	조건부 허용 (관할 경찰서장 허가)	-	조건부 허용 (관할 경찰서장 허가)

3. 현행법과 개정안들의 보수등급 단축 기간 비교

현 행		개 정 안							
		임호선의원		전용기의원		모경중의원		박균택의원	
재직 기간	봉급 지급 기준	재직 기간	봉급 지급 기준	재직 기간	봉급 지급 기준	재직 기간	봉급 지급 기준	재직 기간	봉급 지급 기준
15년 미만	순경 봉급의 100%	9년 미만	순경 봉급의 100%	6년 미만	순경 봉급의 100%	6년 미만	순경 봉급의 100%	6년 미만	순경 봉급 준용
15년 이상 23년 미만	경장 봉급의 98%	9년 이상 17년 미만	경장 봉급의 100%	6년 이상 13년 미만	경장 봉급의 100%	6년 이상 13년 미만	경장 봉급의 98%	6년 이상 13년 미만	경장 봉급 준용
23년 이상 30년 미만	경사 봉급의 98%	17년 이상 24년 미만	경사 봉급의 100%	13년 이상 21년 미만	경사 봉급의 100%	13년 이상 21년 미만	경사 봉급의 98%	13년 이상 21년 미만	경사 봉급 준용
30년 이상	경위 봉급의 98%	24년 이상 30년 미만	경위 봉급의 100%	21년 이상	경위 봉급의 100%	21년 이상 30년 미만	경위 봉급의 98%	21년 이상 30년 미만	경위 봉급 준용
-	-	30년 이상	경감 봉급의 100%	-	-	30년 이상	경감 봉급 감안	30년 이상	경감 봉급 준용
		수당: 각 계급의 100% 지급		수당: 각 계급의 수당을 준용				수당: 각 계급의 수당을 준용	

4. 경찰공무원 · 방호직과 신분 · 채용과정 등 비교

구분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	경찰 공무원	방호직 공무원
신분	▶ 일반 근로자	▶ 공무원(공안직)	▶ 공무원(방호직)
배치 장소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정부청사, 중앙부처 및 지자체 산하 기관 등)	▶ 대한민국 전역에 배치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정부청사, 국회, 서울시 등)
직무	▶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비구역 내의 경비업무만 을 수행(단속·수사 등 업무 제외)	▶ 범죄예방·범인검거·수사· 교통단속 등 치안 전반에 대한 업무 수행	▶ 청사 방호·보안인력관리· 경호·의전 업무 및 다양 한 행정 업무 수행
근로 계약	▶ 청원주와의 근로계약	▶ 공무원 임용	▶ 공무원 임용
채용 방식	▶ 사업장마다 자체 규정에 따라 채용절차 다양 -서류+면접 -서류+체력+면접 -서류+필기+면접 -서류+필기+체력+면접 ※ 필기시험 과목은 채용기관에 따라 2~3과목 출제	▶ 순경 공개 경쟁 채용 (서류, 필기시험, 체력, 면접) ※ 필기 과목: 헌법, 형법, 형소법, 한국사, 영어 ▶ 경력 경쟁 채용 (서류, 필기시험, 체력, 면접)	▶ 공개 경쟁 채용<국회사무처, 서울시 등> (서류, 필기시험, 체력, 면접) ※ 필기시험 과목은 채용기관에 따라 3~5과목 출제 ▶ 경력 경쟁 채용 <정부청사 등> (서류, 체력, 면접)
직급 · 보수	▶ 직급체계 없음 ▶ 국가·지자체 청원경찰은 재 직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 순경~경위 보수를 감안하여 정액 지급 (15년-23년-30년이상)	▶ 순경~경감까지 근속승진 가능 (4년-5년-6.6년-8년順) ▶ 공안직 공무원 보수	▶ 공무원 5~9급 존재 ▶ 6급까지 근속승진 가능 (5.6년-7년-11년順) ▶ 일반직 공무원 보수

5. 국가·지자체 근무 청원경찰과 국가·지자체 외 근무 청원경찰 비교

구분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일반사업장) 소속 청원경찰
신분	▶ 일반 근로자	
배치장소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정부청사, 중앙부처 및 지자체 산하 기관 등)	▶ 한국수자원공사, 가스공사, 방산업체 등 공기업·공공기관·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된 기업
직무	▶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비구역 내의 경비업무만을 수행(단속·수사 등 업무 제외)	
보수	▶ 재직기간에 따른 보수단계를 구분하여 경찰공무원 순경~경위급 보수를 정액 지급 -15년 미만: 순경급 보수 -15년 이상: 경장급 보수 -23년 이상: 경사급 보수 -30년 이상: 경위급 보수	▶ 재직기간에 따른 보수단계 구분없이 경찰공무원 순경급 봉급을 최저임금기준액으로 하고 있음 ※ 「2025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 제2호 가목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참조

6. 전국 청원경찰 시설 및 인원 현황

[’25. 9월 기준]

구분	시설수		인원수		일반시설	
	국가기관	지자체	국가기관	지자체	시설수	인원수
서울	58	66	336	498	16	82
부산	16	46	77	303	31	633
대구	13	43	64	245	7	56
인천	11	37	47	338	12	125
광주	8	30	68	291	3	17
대전	12	36	162	160	9	103
울산	8	6	61	36	9	217
세종	3	1	438	13	1	5
경기남부	32	117	300	591	16	88
경기북부	11	18	37	223	11	43
강원	34	23	272	459	23	137
충북	25	41	244	311	9	65
충남	27	28	124	216	12	79
전북	31	237	296	599	13	61
전남	27	41	203	649	25	316
경북	27	78	156	218	28	487
경남	31	58	256	456	36	443
제주	22	4	228	259	4	25
총합	396개	910개	3,369명	5,865명	265개	2,982명
	1,306개		9,234명			

- 배치시설 1,571개 중 국가기관·지자체 1,306개(83%) / 일반시설 265개(17%)
- 인원 12,216명 중 국가기관·지자체 9,234명(76%) / 일반시설 2,982명(24%)